[장기요양기관용]

#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

◈ 동 매뉴얼은 안전위험 발생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제시한 자료임

## 1. 안전위험 발생 상황

○ 장기요양기관 내·외부에서 **화재 발생**

○ **안전사고(전기, 가스)**

○ **자연 재난(태풍, 수해, 지진 등)**

## 2. 대응 원칙

○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**안전한 대피** 및 **구조를 최우선 수행**

○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**이동서비스 지원,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,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**

◈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행동 특성

- **(의사소통 제약)**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,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발생
- **(이동제약)** 와상,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
  ※ 피난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인력 충원계획을 포함하여 대피계획 수립
- **(감염취약)**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, 감염 전파에 취약하고 감염 시 중증화·사망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
- **(밀접돌봄)**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 단절 시, 생명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음

## 3.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

1 주요활동

○ 재난상황 정보 인지

-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, 라디오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

○ 재난상황 업무조치

-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
-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

○ 연락체계 점검

- 지자체, 소방, 경찰, 응급의료,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
  *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
-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
- 야간에 재난 발생 시,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

2 방재물자 및 구호품 확보

○ 전기, 수도, 가스의 대체수단 확보

- 태풍 재난으로 인해 발생 되는 정전, 단수, 가스 공급 미흡 등에 대한 자가발전 장치 등의 가동상태를 확인
- 전기, 수도, 가스의 대체 수단을 확보

○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 확보

- 수방자재, 의료약품, 구호세트, 식량, 식수,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

## 3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

○ **대피시설 및 전원기관 확보**

- 시설 주변에 **국가가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사전 확인**
- **피해시설에 협조적인 인근 시설 등을 전원 기관으로 복수 확보**
- **도보로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**하여 **그에 맞는 이동 수단을 확보**
- 자체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**이웃 지역주민**이나 **공공기관(지자체, 소방, 경찰, 협력병원 등)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**

○ **대피시설 및 대피방법 적정성 검토**

- **대피시설** 및 **전원시설**은 **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**하여 적절한 시설을 **선정**
- **시설의 관리자**는 **직원, 수급자 및 보호자**에게 **대피 방법**을 알림

| |
|---|
| ①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.<br>② 수급자에게 대피(전원)장소 예상 소요시간,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.<br>③ 가족,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. |

- **수급자마다 대피하는 방법**(도보, 휠체어, 구급 차량 등)**을 지정**하고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
- **상주 직원 수에 따라** 대피로 확보 및 대피 방법을 **준비**
- **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**에 따라 대피 방법을 **각각 준비**
- **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**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
-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**의료박스, 구호박스,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**

## 신고체계

< 재난상황 보고체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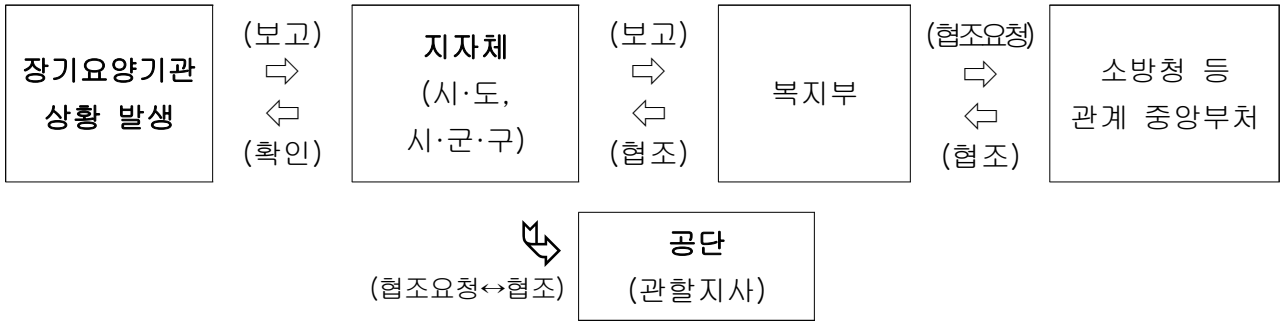


## 행정사항

### 1 양로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 취약 노인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

- **장기요양기관**으로의 **전원 요청** 시, **적극 수용**

※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

☞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044-202-3453)

### 2 장기요양급여기준 예외지침 마련

- 재난 상황으로 인해 **돌봄 서비스 공백** 및 **급여비용 산정*의 불이익**이 **발생하지 않도록** 급여비용 **예외지침**** **마련**

*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서 기준 규정

** 피해기관 및 대피기관 지원 방안 포함

☞ 문의처 :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044-202-3493 / 044-202-3505)

## 참 고1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(행정안전부)

#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

행정안전부

## 지하공간 이용 시

### 반지하주택, 지하 역사·상가

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
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

### 지하주차장

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
*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

### 지하계단

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
즉시 대피
*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

## 차량 이용자

### 차량침수

타이어 2/3가 잠기기 전,
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
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
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

### 지하차도 진입 금지

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
절대 진입하지 않으며,
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

### 세월교(잠수교) 횡단 금지

교량에 물이 월류하면
절대 진입 금지하고
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

## 공동주택 등 관리자

### 평상시

차수판 설치, 모래주머니·양수기 등
비치,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

### 호우 시

신속하게 차수판과
모래주머니 설치

### 대피 안내

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
즉시 대피 안내, 진입 금지

## 참 고2 태풍·호우 관련 6대 위험유형 국민행동요령(행정안전부)

반복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
**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**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
# 태풍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

**하천 급류**

호우 ·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
**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.**

**차량 침수**

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
**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.**

**강풍에 의한 낙하물**

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**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.**

**낙뢰**

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
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**즉시 몸을 낮추고**
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**대피합니다.**

**세월교·교량 횡단**

세월교나 소규모 교량이 물에 잠긴 경우
**절대 건너지 않습니다.**

**물꼬**

호우 · 태풍 특보가 발효된 경우
**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.**

행정안전부

## 참 고3 태풍·호우 관련 어린이 및 노약자 국민행동요령(행정안전부)

반복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
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

보다 나은 정부

# 태풍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

## 어린이

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도록
가까이 이동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도록 합니다.

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강한 바람이나 비를 피해
안전한 장소로 질서를 유지하며 이동합니다.

※ 보호자 행동요령
- 어린이가 길을 잃고 무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합니다.
- 재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자세로 어린이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합니다.

## 노약자

호우 · 태풍 등 특보가 발효된 경우
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.

부득이 하게 야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
사전에 자녀 · 친척 · 이웃에게 알립니다.

※ 보호자 행동요령
- 호우 · 태풍 특보 시 부모님 등 노약자에게 외출하지 않도록 안부 전화를 합니다.
- 부모님 등 노약자와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며, 연락 두절 시 경찰서, 관공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.

행정안전부

## 참 고4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포스터(식품의약품안전처 )

## 참 고5 폭염대비 건강수칙 포스터(질병관리청)